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9호 본문 중 “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소방시설) 법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화구획
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우편 또는 교부”를 “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(다만, 특수건물 관계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안전점검 후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수건물) ①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 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.	제2조(특수건물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 <u>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 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. 다만, 한국지방 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 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 다.	9. 「 <u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0. ~ 18. (생 략)	10. ~ 1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조의2(소방시설) 법 제2조제4

제12조(안전점검) ① (생략)

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(이하 이 항에서 “통지서”라 한다)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

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화구획
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

제12조(안전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(다만, 특수건물 관계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)----.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안전점검 후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<u>장을 말한다) 또는 소방서장에 게 알려야 한다.</u> 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보험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67